##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07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김준형・서왕진・신장식

이해민 • 이재강 • 박은정

정혜경 • 박지원 • 권칠승

황 희·김재원·백선희

강경숙 · 서영교 의원

(14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 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 협의회의 업무는 통일부장관이 총괄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 또한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어 국무총리가 위원을 임명·위촉함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임.

아울러 유사한 성격을 가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 정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 주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법령 간 정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하는 것임(안 제5조제3 항).

법률 제 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무총리가"를 "통일부장관이" 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②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③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국무총리가</u> 임명하거나 위촉한	<u>통일부장관이</u>		
다. 이 경우 위원 중 7명 이상			
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			
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			
는 사람으로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